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문소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꽤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KEYWORDS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기사 삭제 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winhead@naver.com

*** mkhufs@gmail.com,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¹⁾의 법적 성격을 검색 결과 목록에서의 링크 삭제 청구권(이하 ‘링크 삭제 청구권’)으로 구체화시킨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대 곤잘레스 판결 (Google Spain v. Gonzáles, 2014. 5. 13) 이래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뜨겁다. 잊힐 권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가 관련 주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의제 설정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8월 4일 ‘제3기 방통위 상임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 관련 과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잊힐 권리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²⁾ 또한, 방통위는 2015년 5월 15일에는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이데일리, 2015. 5. 15).

언론중재위는 2014년 11월에 주최한 국제 학회의 주제들 중 하나로 잊힐 권리를 다루었다. 같은 해 12월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현행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권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추가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경환, 2014, 12월; 오마이뉴스, 2014, 12, 6). 언론중재위는 2015년 6월에는 ‘기사 삭제 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광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두 달 뒤인 8월에는 언론중재위 정기세미나에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을 포털 뉴스 서비스 기사 댓글, 토론방, 카페, 블로그까지 확대하고 기사 삭제 청구권, 검색 차단 청구권 등 구제 수단의 신설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한편 2015년 3월 25일에는 새누리당 소속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의 핵심에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계에서는 잊힐 권리의 실질적인 집행 기제로 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 법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2015년 10월13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 피해 구제 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을 내놓았다. 개정안

1)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역어로 ‘잊혀질 권리’로 표현이 굳어지고 있지만, 국문법상 ‘잊힐 권리’가 맞기 때문에 이하에 ‘잊힐 권리’로 표현함.

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8월4일 ‘제3기 방통위 상임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폭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 최근 떠오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슈의 법제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2014. 8. 11).

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를 언론사의 서버까지 포함해 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중재법 제17조의 3’에 신설했다. 그 구제의 기간도 ‘인지한 뒤 1년’으로 잡아, 보도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정정·반론 보도를 요청하지 못하는 현행 구제 기간을 크게 확대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의 복제와 기사 댓글에 따른 피해 구제책도 언론중재법 제18조의 2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제7조 12를 신설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유사 뉴스 서비스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이들 전자 매체에 대해 뉴스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접수하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사 등 전통적인 언론사에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언론사에 정정과 반론, 추후 보도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공포된다면 언론사의 서버에서 관련된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디지털 시대의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로 확대되어 언론사의 서버에서 기사 삭제를 청구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된 상황에 주목한다. 이는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물론, 2014년 구글 스페인 판결로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과거의 신문기사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이재진, 2009; 이재진·박성순, 2012). 그러나 해외에서 잊힐 권리의 성격이 링크 삭제 청구권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디지털 시대의 개인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기사 삭제 청구권 도입을 잊힐 권리와 연계하여 주장하는 언론학자들이 있다(주정민, 2015; 홍숙영, 2014a; 2014b). 이는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법제(GDPR)가 도입하고자 하는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e)’에서 언론 보도를 예외 영역으로 제외한 세계적 조류와도 결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삭제권’이 적용되는 세계적 기준을 타진한다. 또한 국내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가능성을 구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잊힐 권리 관련 해외 현황을 유럽을 중심으로 탐구하여 잊힐 권리의 의의와 실질적인 법적 구현의 실태를 밝힌다. 3장에서는 한국의 인격권 침해 표현에 대한 구제 법률 및 그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4장에서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기사 삭제 청구권의 세부적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2.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와 함의

1) 유럽의 잊힐 권리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본격화된 곳은 유럽인데,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기원과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프랑스법상 ‘망각권(a right to oblivion: le droit à l’oubli)’이다. 즉, ‘유죄 범죄로 확정된 자가 형기를 마치면 유죄 확정 사실에 대한 출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 권리’에서 기원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다(박정훈, 2013). 이는 범죄자의 재활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2009년 독일연방법원이 위키피디아(Wikipedia)에게 살인죄로 복역하던 중 새로운 증거의 출현으로 가석방된 두 사람의 이름을 위키피디아 게시물에서 삭제할 것을 명한 벨레(Werlé) 판결이 있다(박정훈, 2013).

둘째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data privacy)권의 확장 차원에서 논의되는 잊힐 권리로, 범죄인들의 재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으로서의 잊힐 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73년 ‘데이터 보호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조소영, 2012). 보다 직접적인 토대는 유럽연합이 1995년에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이하 ‘1995년 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유럽연합이 1995년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월 25일에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2012년 규칙안’)에서였다. 이 규칙안의 제17조는 ‘잊힐 권리와 삭제권(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이라 명명되어 있었다.

유럽연합은 2012년 규칙안에서 새로운 정보 기본권으로서의 잊힐 권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더 이상의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① 수집 또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한 경우, ④ 개인정보의 처리가 그 밖의 이유로 이 규칙안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함인선, 2012)이다. 이후 유럽의회는 2012년 규칙안에 대한 제1차

독회를 마치고 2014년 3월 12일에 수정안을 채택하였다.³⁾ 이 수정안에서는 잊힐 권리라는 용어가 주는 불명확성으로 인한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17조의 표제를 ‘삭제권(right to erase)’으로 변경하였다(문재완, 2015).

한편,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스페인 판결을 통해 검색엔진 사업자인 구글이 1995년 지침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처리·통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의 경우 정보 주체인 곤잘레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래된 신문기사 링크를 구글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Google Spain v. González, 2014). 이 판결은 링크 삭제의 대상이 된 내용이 제3자인 신문사가 작성한 합법적 게시물이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논란과 함께 주목할 점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언론 기사 자체를 언론사의 서버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2) 구글 스페인 판결과 잊힐 권리

구글 스페인 사례는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숙제에 대한 해법들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는 부정확한(inaccurate)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거나(inadequate)”, “관계가 없거나(irrelevant)”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이상 관계가 없거나(no longer relevant)”, 혹은 “과도한(excessive)” 개인 정보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Google Spain v. González, 92~93문단). 이는 잘못된 사실 정보를 담고 있는 오보뿐만 아니라, 애초에는 합법적인 게시물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되는 온라인 게시물이 있고 이러한 게시물 역시 1995년 지침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유통과 급속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검색엔진의 역할에 주목하여, 특정 개인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profile)’ 혹은 ‘구조화된 총람(structured overview)’을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김민정, 2015a).

앞서 언급했듯이 구글 스페인 판결은 오래된 신문기사에 대한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의 인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중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정보보호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제29항 정보 보호 작업반(Article 29 Data

3) 유럽연합의 일반 입법 절차에 따르면, 법안은 유럽연합의 독립된 3가지 지배기구들—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각 기구는 모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문재완, 2015).

Protection Working Party)’은 검색 결과 목록에서 링크를 삭제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13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11월에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대 곤잘레스 판결의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n ‘Google Spain and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C-131/12)”을 발표하였다. 구글 역시 ‘잊힐 권리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to Googl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를 구성하여 개인의 잊힐 권리와 공중의 정보 접근권을 조율하는 데 사용할 기준점 4가지를 2015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천명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소들은 (1) 링크 삭제를 요청한 정보 주체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혹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같은 정보 주체의 성질에 관한 판단, (2) 링크 삭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1995년 지침에 규정된 민감 정보 (sensitive information)에 해당하는 은밀한 성격의 정보인지 등과 같은 정보의 성질에 대한 고려, (3) 저널리즘 관행을 준수하는 언론사 혹은 신뢰도가 높은 블로거가 게시한 정보인지와 같은 정보 발간의 맥락 및 출처에 대한 판단, 그리고 (4) 과거의 경미한 범죄 기록 등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고려들이다(김민정, 2015b).

3) 구글 스페인 판결 이후 잊힐 권리의 집행

구글은 곤잘레스 판결 직후인 2014년 5월 29일부터 링크 삭제 요청들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했고 자사의 잊힐 권리 집행 현황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2016년 3월 11일에 업데이트 된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글에 접수된 링크 삭제 요청 건수(request)는 총 401,066건이다. 하나의 링크 삭제 요청이 여러 개의 링크들을 삭제해 달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삭제 요청된 링크 수(URL)로는 총 1,407,774개라고 한다(Google, 2016). 구글은 지금까지 삭제 요청된 링크들 중에서 42.6%의 링크들을 삭제하였으며, 이러한 링크 삭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이트 10개를 밝혔다. 그 1위는 페이스북(Facebook)이며, 이들 10개의 사이트들 모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인명/주소 검색 서비스였다. 10개의 사이트들 중에 언론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Google, 2016)는 점이 한국에서 행정기관이 ‘기사 삭제 청구권’을 법제화하는 가운데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국의 가디언(Guardian)지는 구글 투명성 보고서의 소스 코드에 숨겨져 있던 데이터를 발견하여 구글의 잊힐 권리 집행 현황을 보여 주는 추가 자료들을 2015년 7월에 공개하였다. 가디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구글이 접수한 전체 요청의 95.6퍼센트는 사인들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private and personal in-

formation)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며, 구글은 이러한 요청들 중 48%를 받아들여 링크들을 삭제하였다(Guardian, 2015. 7. 14; 김민정, 2015b 재인용).

‘구글 스페인 링크 삭제’ 결정 이후의 잊힐 권리 집행 현황의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유럽에서 잊힐 권리는 그 개념적 시작이 그러했듯이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나 온라인 인명/주소 검색 서비스에 나타나는 과도한 개인 정보들의 노출이 주요 쟁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적인 정보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구글의 잊힐 권리 집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텔레그래프(Telegraph)와 BBC 등의 언론사들은 구글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삭제된 자사의 기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BBC, 2015. 6. 25; Telegraph, 2015. 9. 3; 김민정, 2015b 재인용).

한편, 곤잘레스 판결 이후 유럽 밖에서 잊힐 권리의 집행을 명령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있다. 2014년 10월 일본 법원은 구글사에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0년 전에 일어났던 범죄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언급된 개인이 요청한 링크 삭제 요구였고 이 개인의 경우 무죄로 판명이 났었기 때문에 링크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Kageyama, 2014. 10. 10; 김민정, 2015b 재인용). 2015년 1월 멕시코 프라이버시 보호 당국은 구글 멕시코에게 유명 사업가에 관한 신문기사 3건 링크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바가 있었다고 보도되었다(Wall Street Journal, 2015. 5. 27; 김민정, 2015b 재인용). 이들 사례들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결정과 마찬가지로 링크 삭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링크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 자체를 온라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다. 곤잘레스 판결을 오인한 하급법원들은 기사 내용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나중에는 상급법원이 이러한 하급법원들의 결정을 기각하였다(Gasparian, 2015. 3월; 김민정, 2015b 재인용).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인식 및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후진국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4) 잊힐 권리의 보호법익

지금까지 잊힐 권리의 기원 및 법적 권리로서의 전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201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 및 인정되고 있는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형의 집행이 끝난 과거 범죄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재활의 기회

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잊힐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잊힐 권리는 범죄 기록이 공공의 정보이고 진실한 정보라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진 과거의 범죄나 처벌 사실은 각종 기록에서 삭제해, 국가에서도 이런 과거의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재진과 구분권(2008)은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과거 범죄 보도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⁴⁾

구글 스페인 결정 이후에 제29항 정보 보호 작업반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항목은 링크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된 정보가 ‘범죄 사실에 관한 정보인가’를 묻고 있다. 범죄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 원칙으로는 오래 전에 일어난 경범죄의 경우에는 링크를 삭제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천명하고 있다(김민정, 2015a). 일본에서도 야후 재팬이 2015년 3월에 ‘검색 결과 삭제(비표시 조치) 신청을 받았을 경우 야후의 대응 방침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⁵⁾ 이 보고서는 ‘이미 장기간이 경과한’ 과거의 경미한 범죄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므로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경과’의 예로 쇼와시대(1926년~1983년)를 들었다(김민정, 2015b).

요약컨대, 첫 번째 유형의 잊힐 권리 인정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 관련 정보가 과거 기사의 인터넷상에서의 유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해지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전과자의 재활 및 이중 처벌 금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형을 마친 전과자의 인권 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과거의 범죄 기록을 넘어서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 전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검색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의 잊힐 권리이다. 2014년 5월 구글 스페인 링크 삭제 결정에서 핵심이 된 내용이다. 적법 게시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정보가 되었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4) 한편,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허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신상공개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년에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이는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허용하는 미국의 메간법(Meagan's law)이 합헌으로 판명 난 것과 유사하다(이재진·구분권, 2008).

5) 해당 보고서는 다음의 페이지 중간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publicpolicy.yahoo.co.jp/2015/03/3016.html> 일본어 자료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 박수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 주체는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검색 결과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링크 삭제’의 핵심은 정보나 언론 기사 존재의 유무라기보다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검색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대된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차단하는 문제였다(김민정, 2015a).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인정된 잊힐 권리는 정보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래 게시글의 삭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는 링크의 삭제를 허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014년 5월 이래 ‘링크 삭제’가 집행 결과와 당초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유형의 잊힐 권리의 보호법익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로 파악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맞서 인격권을 보호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공직자나 공인의 명예훼손을 구제하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링크 삭제권’이 활용되지 않았음은 틀림없다.

5) 잊힐 권리에 대한 반론: 디지털 기억의 중요성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에 대한 대중적 논의에 불을 붙인 사람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였다. 그는 2009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25살의 싱글맘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교사가 될 꿈에 부풀었던 스테이시 스나이더의 좌절을 소개했다(Schönberger, 2009). 교생실습까지 마치고 교사가 될 꿈에 부풀어 있던 스테이시는 졸업 직전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대학 당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올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할로윈 파티에서 해적 모자 복장으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검색된 것이다. 상황이 좋았더라면 동료 교사가 됐을 한 교사가 이 사진을 발견하고 교사가 술 마시는 사진은 직업윤리에 어긋난다고 대학 당국에 신고했던 것이다. 스테이시가 이 사진을 내리고자 했지만, 인덱싱(indexing)되고 웹 크롤러(web crawler)가 긁어서 보관 중인 탓에 그 사진은 내려지지 않았다. 교사가 될 수 없게 된 스테이시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스테이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쇤베르거가 제기한 문제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게시한 표현물의 삭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구글 스페인의 링크 삭제 사례와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쇤베르거는 같은 책에서 “유사 이래 인류에게 망각은 일반적이고, 기억하는 것이 예외였다”면서 디지털 기술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완벽한 기억 탓에 인류와 사회가 망각을 잃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원형 감옥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21세기 인류를 걱정하며, 망각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라고

주장했다(Schönberger, 2009). 그러나 쇤베르거가 주장하는 ‘인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망각했다’는 주장이 과연 인간의 역사와 부합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류는 역사시대는 물론 선사시대에도 기억하기 위해 몹시 애를 써 왔다. 기록하던 시대가 왔음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는 구전문학 등이 꾸준히 발전해 왔던 이유는 ‘기억’ 때문이었다(Rifkin, 2010).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이전에 노인들이 우대받았던 이유는 뛰어난 기억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Gladwell, 2008). 이는 특히 농경의 역사가 깊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중요한 정보의 보고였다. 이른바 당대의 ‘빅데이터’가 노인들의 기억이었던 것이다. 하늘이 어떻게 됐을 때 비가 오고, 달과 별이 어떤 형상일 때 해일이나 괴이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모두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혁명 이전에 도시화의 수준이 낮았을 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느 집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를 파악할 정도로 시시콜콜한 정보를 통해 평판을 공유해 왔다(Whitfield, 2012).

전우용(2015)은 “역사란 인간의 집단 기억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개인의 것이든 집단의 것이든 기억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자 성찰의 원천 재료”라고 강조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기록하여 전승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증주의 역사학과는 정반대편에서 있는 이 에이치 카(E. H. Carr)도 역사는 “산자가 죽은 자를 되살리고 죽은 자가 산자를 지배”하는 것이라면서 역사를 “과거와의 대화”로 규정했는데(Carr, 1961), 이는 인류가 어떤 기억을 호출해 내서 그 기억을 지배적으로 만드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중심으로 현재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불리한 정보는 삭제하길 희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잊힐 권리의 인정, 즉 어떤 기억을 디지털 세상에 남겨 두었다가 불러낼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단순하지 않다. 쇤베르거가 소개한 스테이시처럼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때문에 취업과 평판에 불이익을 받은 평범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만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고위 공직자나 실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자 잊힐 권리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민주화의 토대가 허약하고 삼권분립이 훼손되거나 집권당에 따라 헌법 정신이 무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국가는 잊힐 권리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더욱 고심해야 한다. 과연 잊힐 권리가 장삼이사와 같은 평범한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권력 감시를 위해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여 민주적인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할 가능

성이 높은지를 더욱 주의 깊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3. 인격권 침해 표현에 대한 구제 법률 및 그 집행 실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과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을 시도하고 있다. 2015년 3월 25일에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 제안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근 인터넷 기반의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면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행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 구제의 방법 중의 하나인 정정보도 청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15). 언론중재위가 제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안 역시 “디지털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지는 언론 보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예 및 인격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구제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언론중재법 개정 시안- 취지 및 해설, 2015).

과연 변화된 언론 환경과 디지털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지는 언론 보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사 삭제 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법률에 의해 인격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지, 즉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을 통해 메워야 할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권리의 입법이 가져올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지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한국에서 인격권 침해적인 표현을 규제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들(형법 제307조~제312조)과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등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문화 됐지만 한국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형법 제307조 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형법 제310

조) 하지만, 공직자나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주 소송을 거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볼 때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을 민사소송으로 규율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되었으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모욕죄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어 사실(fact)이 적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표현마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규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이러한 법률들의 존재와 함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 사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딸이 수원대에 특례로 교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연합 뉴스TV, 2015. 4. 2). 또한 보수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고발하여 국제적인 언론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이 소송은 1심에서 산케이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언해 실익 없이 프리덤하우스에 한국 언론 억압 사례로 기록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5년 9월 5일에 ‘입 다물라: 박근혜 정부의 국민 입막음 사례 22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 국가 기관이나 공직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소송 사건은 30건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취임 이후 2년 6개월간의 기간 동안 22건의 민·형사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소송이 정부 및 공직자 비판에 관련된 것들이었다(참여연대, 2015). 이러한 소송들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경우는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국민 혹은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족쇄를 채우며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모욕죄 고소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2,200건이었던 모욕죄 고소 건수가 2014년에는 2만 790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듣는 경우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들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어(최은숙, 2014),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모욕죄 남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서울신문, 2014. 12. 10).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임시 조치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조항에 더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는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자신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업체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일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 조치를 행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임시 조치를 당한 글은 게시자 등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30일 후 글이 삭제되기 때문에 ‘디지털 삭제권’이 발동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12월 29일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합법적 게시물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가 소명만 되면 차단할 것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박경신, 2015. 1. 5).

2013년 10월 최재천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의한 임시 조치가 9만 2638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임시 조치 건수가 23만 167건으로 무려 2.5배가 증가했다. 방통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에 접수된 네이버, 다음, SK컴 등 3개 포털사의 임시 조치 현황은 2013년에는 37만 4000건, 2014년에는 45만 4000건이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이러한 임시 조치의 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3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모아놓은 글에 대해 소망교회의 요청으로 임시 조치 통보가 내려진 사례,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은 해당 성형외과의 사진들이 임시 조치로 인해 인터넷에서 사라진 사례들로, 기업, 종교단체, 연예인, 정치인들이 임시 조치를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비판하였다(한겨레, 2015, 4, 13).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09년 4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을 제시하고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와 관련해 신고 요건, 처리 대상, 처리 방법, 제한 조건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 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였다⁶⁾. KISO 정책규정집 제2장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 등에 처리의 제한을 규정한 제5조 ①과 ②, ③항이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 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 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 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 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는 제5조 ①은 정책결정 제2호의 결정을 따른 것이고, 제5조 ③은 정책결정 제14호를 반영한 것이며, 제5조 ②항은 2013년 2월 21일 정책결정 제18호를 반영한 것이다(이승선, 2013).

민간기업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얼마나 정부기관의 압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KISO가 명예훼손 적용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원칙은 2014년에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KISO는 2014년 10월 22일에 제5조 ⑤를 수정했는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인터넷에서 공인에 대한 표현 자유에서 한 발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승선, 2014). 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정무직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임시 조치한 뒤에 나타난 정책결정이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승선, 2014). 현재는 이 결정에서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중략)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공인의 개인적 사생활도 문제 제거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결해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훼손에 앞선다고 했다.

3) 방통심위의 명예훼손 정보의 심의

온라인 표현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

6)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집

<http://www.kiso.or.kr/%ec%a0%95%ec%b1%85%ec%9c%84%ec%9b%90%ed%9a%8c/%ec%a0%95%ec%b1%85%ea%b7%9c%ec%a0%95/>

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 1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방통심위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심의할 수 있다. 방통심위는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2015-4호를 통해, 이 조항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심의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방통심위는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자격의 제한 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 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10. 2).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3자 혹은 방통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이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⁷⁾ 그러나 방통심위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12월 10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⁸⁾

4) 언론중재법

현행 언론중재법 역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 보도를 규율하고 있는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인 경우에는 정정 보도 청구권(제14조)과 반론 보도 청구권(제16조)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1조를 통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요할 수 있는 특칙을 제공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 1항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개인정보로 법원이 판단한 초상, 음성, 대화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승선(2013)은 “한국의 법률 체계가 온통 명예훼손 지뢰밭”이라고 진단하고 특히 “언론중재법은 거의 통째로 언론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언론중재법에 근거하여 언론중재위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의 보도 전반을 조정과 중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2014년에 언론중재위에 청구된 조정 건수는 19,048건으로 2013년의 2,433건에 대비해 약 8배가 증가했다(김동규, 2015). 1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 요청이 증가한 이유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유명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족과 유 전 회장이 관련된 기독교복음침례교회 교단에서 언론 중재를 청구한 건수가 16,554건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한

7) 지디넷코리아 (2015, 9, 23).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 중단해야”

8) PD저널 (2016, 12, 10).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안 의결”: 직권 심의 공인에 대한 심의 등 제한 약속 ... “최악 막았지만”

다(김동규, 2015). 당시 언론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 한 회사당 많게는 1,000건이 넘게 들어온 이 조정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받아들여 일괄적으로 해결했다(한겨레, 2014. 12. 15).

당시 유병언 전 회장 측이 요청한 세월호 관련 조정 사건의 법익 침해 유형은 명예훼손이 16,403건으로 2014년 전체 조정 요구 건수의 99.1%를 차지하고 있다(김동규, 2015).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에서, 이런 무더기 명예훼손 관련 조정은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받아 보기 전에 유 전 회장 측의 뜻대로 해결된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의 명예훼손 조정 역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언론중재법 제17조에 규정된 추후 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추후 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대법원 판례에서 인격권의 사전·사후 구제

한국의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에 대해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사전적 금지 청구권이 해당된다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대법원 2005. 1. 17. 선고, 자, 2003마1477 결정). 대법원의 1996년 판결은 비방 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광고 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것이었고, 대법원의 2005년 결정은 서적 발행 판매 반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이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사후적 금지 청구권의 일종으로, 방해 배제 청구권을 적용해 57건의 기사 중 49건의 삭제를 인용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은 “기사를 삭제하고 미디어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는 원심을 인용,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요

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현재 원고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양철한(2014)은 ‘방해 배제 청구권’을 적용하여 기사 삭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단서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고 해도—즉, 첫째로 비진실성 또는 비공익성이 인정되고, 둘째로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도—대법원의 결정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 삭제’ 결정과 비교해 보면 훨씬 ‘과격함’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피해자)는 증명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⁹⁾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다.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이러한 법들을 통해 현재 규제되고 있는 표현물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자.

우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허위 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하지만, 법정에서 진실성과 공공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언론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제가 된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표현물이 규제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합법 표현물까지 규제되고 있다. 셋째로, 행정기관인 방통심위와 언론중재위가 정보통신에 의한 심의 규정과 언론중재법에 따라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거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범죄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언론중재법은 추후 보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에 대법원은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서 명예를 훼손하

9) 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판결(2011. 9. 2).

는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 청구 요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비롯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안들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한국의 법적 규제의 틀 속에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언론중재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회적·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언론중재법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1) 과거 기사 삭제의 필요성과 언론사의 대응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한 촘촘한 언론 규제의 틀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상 기사 삭제 청구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과거에는 적법했던 보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기사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기사 유통을 포털과 제휴해 노출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 언론의 기사가 포털 검색을 통해 열람 가능해진 상황에 기인한다(이재진·구본권, 2008). 보도의 유통방식이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권은 보도가 된 지 6개월이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역사적 기록물로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색 결과 목록에서의 삭제 요청을 인정하는 것도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마당에 기사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 사료된다.

한편, 과거의 범죄 관련 보도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첫 번째 개념에서 언급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재진과 구본권(2008)은 1999년 1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언론의 피의 사실 보도 관행이 개선되고 사건 당사자의 실명 보도에 관한 기준이 엄격해졌으나, 2000년 이전의 신문기사들에는 범죄 관련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던 당시의 관행 때문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고 이러한 과거의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재진(2009)은

인터넷에 게재된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당사자 개인의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 체계상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며,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각종 공문서상에서 기록이 사라졌는데 인터넷상에서 언론사의 사건·사고 기사로 당사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본다면 국가의 법적 절차와 효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시효가 만료된 범죄 관련 기사나 오보 등에 관해서는 언론사들이 독자권익위원회나 옴부즈맨 제도, 고충처리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6년 4월 한겨레신문은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과거 기사 삭제 및 수정의 구체적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사를 수정·삭제해 달라는 관련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첫째 최종심(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거나 무혐의가 밝혀진 경우, 둘째 오보였을 때, 셋째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삭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이재진·구본권, 2008).

구본권(2015a)은 또 한겨레(2006년), 연합뉴스(2007년), 국민일보(2009년), 한국일보(2011년), 중앙일보(2013년), 조선일보(2013년) 등 다수의 중앙 일간지에서 묵은 기사와 인터넷 기사의 수정 삭제에 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요청이 올 경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현행 언론중재법으로는 전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은 30년 전의 과거 기사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고충 처리 코너 2006~2013년 기사 피해 구제 사례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가 밝힌 ‘피해 구제의 원칙’은 한겨레와 비슷한데, 오보인 경우, 범죄 관련 보도 후 무죄·무혐의가 확정된 경우, 오래전 범죄 관련 보도로 신원이 노출된 경우, 미성년자의 초상권 침해, 사진 기사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방식 등일 때 등이다(구본권, 2015a). 언론사의 이런 기준들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오래됐다고 해서 관련자의 요구대로 기사를 삭제할 수는 없고, 신문은 날마다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의 기록물이라는 판단에서 도출된 것(이재진·구본권, 2008)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개별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과거 기사 삭제 및 수정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언론중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언론중재법을 통해 기사 삭제 청구권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언론 보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언론 중에서도 신문사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중재법이 관할한 언론의 영역은 신문사였다. 신문사는 보도를 신문에 인쇄해 배포하는 매체

로서 방송사나 인터넷 전용 신문, 통신사 등과 달리 기사의 수정과 정정에 대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신문사들이 과거 기사 삭제 요청 기준을 공개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인쇄 매체라는 특성상 발행 후 추후 수정에 대해 방송이나 통신사 등과 달리 거부 성향이 가장 강하다(구본권, 2015a)고 했다. 신문기사는 인터넷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이 실물 기록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탓이다. 또 신문과 방송, 통신의 이런 기사 수정과 정정에 대한 태도가 서로 상이한 이유로 황성기(1998)는 이들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적용 범위가 다르고, 규제의 원리도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은 공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정훈(2013)은 잊힐 권리는 모든 이가 그들의 개인사를 다시 기록하거나 쓸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권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판으로 합리적 비판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라고 해서, 과거 언론 보도를 삭제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주요한 기록을 삭제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언론중재법 2015년 개정안 분석

(1) 개정 근거

언론중재위는 2015년 10월13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 피해 구제 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을 통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언론중재위가 밝힌 개정 취지는 “현행 언론 피해 구제 법제가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된 탓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인격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명문화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격권 침해 표현 행위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인터넷 보도 기사에 대한 댓글의 인격권 기타 권리 침해 행위의 구제 방안, 그리고 ③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와 법원에서 구제가 확정된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확산되는 경우 구제 방안에 관해

10) 언론중재위원회 (2015.10.1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 피해 구제 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 79쪽.

④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데 있음.¹¹⁾

이어 언론중재위는 “본 개정안은 그 개념과 구현 방안에 관해 논란이 많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전반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명예훼손법의 법리와 새로이 인정·확립된 인격권 법리를 기반으로 인터넷 시대에 큰 과제로 대두되는 언론 피해 구제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언론중재위는 대법원이 2009년 4월 16일에 선고한 2008다53812 판결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있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기사를 보도한 보도 매체가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기사를 보관, 선별하여 게시한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언론중재위는 이 판결을 주석에서 인용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판결문 부분을 인용하면서 언론 피해 구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책임이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¹²⁾는 점 역시 분명히 밝히고 있는 판결이다. 또한 이 판결에서 3인의 대법관이 제시한 별개 의견에 따르면, “다수의견이 적절히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인 평가를 거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삭제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¹³⁾라고 하여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매우 신중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별개의견이 이러한 신중론을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11) 위의 보고서, 79쪽.

12) 대법원 선고 2008다53812 판결(2009. 10. 27).

13) 위의 판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중략) 더구나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특정 주제나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비판이나 논쟁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게시되는 표현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외의 매체를 통한 표현 행위와는 달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인지 구별하는 기준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그에 기한 반론 가능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는 등, 법률가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명예훼손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곧바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¹⁴⁾ (밑줄 강조는 논문의 저자에 의한 것임).

즉, 언론중재위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은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면서 온라인 게시물 삭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천명한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기사 삭제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확인 적용한 판결로, 본 논문의 앞 절에서도 소개했던 2010다60950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이 판결에 비춰볼 때, 사이버상 인격권 침해 배제 청구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17조의 3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고 있는 제17조의 3이 이번 개정 시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조항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2) 기사 삭제 청구권 '제17조 3'

개정안에 신설된 제17조의 3을 언론중재위는 '사이버상 인격권 침해 배제 청구권의 명문화'라고 해석했다. 인격권을 물권으로 보고 방해 배제 청구권의 법리를 도입한 것이다. 제17조의 3은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침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을 밝힌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7조의 3(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 배제 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

14) 위의 판결.

보도 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는 자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 상태를 관리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제17조의3 제1항 1호에서 문제 삼고 있는 허위 보도의 경우는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도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 언론사에서는 이미 단순 사실의 오보로 판단된 기사는 바로잡아서 포털 등으로 재전송하고 있다. 문제는 당사자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언론사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되기 이전에 언론중재위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서버)에 있는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보도 내용 자체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언론중재위에서는 사생활 핵심 영역을 ‘독일 판례에서 확립된 성적 영역 및 내밀 영역’으로 제시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사례들만 보아도 이 기준이 그다지 명백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인가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및 동영상 존재 의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인가 아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은 논의 대상인가 아닌가? 과연 이런 의혹은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한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가 사법부에 앞서 판단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각 나라마다 인격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잡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위는 제17조의3 제1항 3호를 ‘중대성 요건’이라 해설하며, 이 요건이 피해자의 권리 남용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 소개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17조 3의 제1항은 침해 배제 청구권을 요청하는 자(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 우선, 입증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가 인용하고 있듯이 사전 보도 금지(방해 예방 청구)나 사후 기사 삭제(방해 제거 청구)의 경우

에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보도가 진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토록 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결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입증 책임의 전환은 언론사에게 진실성과 공공성을 입증토록 하는 방식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다만, 허위의 언론 기사로 인해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허위의 언론 기사”라는 입증 및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모호하다.

또한, 제17조 3의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증명하는 경우를 침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이라 밝혔는데, 3호의 내용(“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살펴보면, “기타 보도”라는 서술은 매우 포괄적이며,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라는 단서 역시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중대성 요건’이라 해설된 이 단서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 남용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동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 남용 조장 및 언론중재위 권한 확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7조 3의 제2항에서는 위법한 보도를 퍼간 게시자들에 대해 기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확산 방지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위축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제17조 3의 제4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 조항은 기사 삭제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정정·반론 보도 청구 요건 기준에서 훨씬 길어진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보도 혹은 반론 보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최초 인지의 시점이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지났을 때”에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기사 삭제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을 인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산술적으로 4배나 연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사 삭제 청구의 기준으로 인지 시점을 삼고, 언론 보도의 시점을 추가 고려 대상으로 넣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언론사가 책임져야 하는 기간은 한없이 길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가령 10년 전에 발간된 신문 기사가 2016년 1월에 인터넷 게시판에 다시 올라온다면 해당 게시물을 인지한 자는 10년 전 기사에 대해 2016년에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데, 이는 언론 보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정정·반론 보도 청구를 금했던 기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기타 문제점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다른 문제들도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의 15에서 “언론 보도”는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중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언론 보도”의 범위인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는 범위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즉, 스트레이트 기사 등 ‘사실 기사’에 관해 잘못을 따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문이나 방송의 논평이나 사실 등 ‘의견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가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로, 개정안은 ‘언론 등에 의한 피해 구제의 원칙’인 제5조의 ②를 삭제했다. 현행 이 항목은 일종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시한 조항인데, “인격권 침해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이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형법 제311조는 ‘오로지’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5조의 ②를 삭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2013년 12월 26일 결정¹⁵⁾에 반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1999년 6월 24일 선고¹⁶⁾한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형벌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를 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로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중략) (고려하여) 언론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도 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8조의 2(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는 인터넷상의 침해적 보도의 확산과 전파에 대한 대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제적인 댓글 방지는,

15)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2013.12.26.).

16) 헌법재판소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1999.6.24.).

사이버모욕죄 입법 노력 등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의 과도한 업무 확장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한 규제 역시 이미 방통심의위에서 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중첩된다.

5. 결론: 주요 함의와 제언

각 문화권마다 ‘기록’과 ‘사생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국의 문화에서는 잊힐 권리보다 기록할 권리, 사생활보다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아 온 전통이 있다.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선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를 생각해도 그렇다. 조선 태종이 사관에게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발언까지 기록하는 치열함이 한국인의 피에는 흐른다고 봐야 한다. 왕조국가에서 지엄했던 왕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기보다 후세에 기록을 남겨서 역사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는 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에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발동해 원래의 기사 자료를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오보’조차도 일단 공포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구본권(2015b)은 ‘김일성 사망 오보’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 ‘오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으로 흔적을 없애게 될 경우 ‘역사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구본권은 첫 보도는 ‘오보’였을지라도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는 시일이 필요하고, 각종 제보가 모여져 진실의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사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뉴욕타임스가 날조 오보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뒤 ‘편집자 알림’ 등을 통해 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 표현에 대한 구제 법률들과 그 집행 실태를 짚어 볼 때, 기사 삭제 청구권이 잊힐 권리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이진규(2014)가 지적하고 있듯이 “공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알 권리와 더불어 그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권력의 불균형에 맞서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한국 같은 권위주의적 풍토에서 필요하다(33쪽)”고 하겠다.

또한, 언론중재위가 제안한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언론중재위는 언론계를 모두 모아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적인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사 서버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언론이 확산되는 변화의 시기에 이른바 전통 미디어라 불리는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재산인 기사 삭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쏟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중재위에서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또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진과 만나 이런 법안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일부 디지털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을 불러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중재위가 현재 ‘전통 미디어’인 신문사나 방송사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언론사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에서는 ‘기사 삭제 청구권’이 포함된 ‘제17조의3’ 신설과 관련해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신문사 등에서는 오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기사에 대해 뉴스 소비자의 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정하거나, 포털 등에서 링크 삭제를 통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제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언론사 서버에 있는 원래의 기사를 삭제하지는 않는다. ‘기록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오보’로 진단됐다고 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은 언론중재위가 언론사에 강제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중재위는 사법부가 아니라 민간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기관이다. 법원에서 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기사에 대해 행정지도만으로 손쉽게 기사 삭제를 결정하고 지시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언론계는 공인의 인격권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해 잦은 논란을 겪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가 법적인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중재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언론중재위에서는 오히려 ‘공인’, ‘공공의 이익’, ‘공인에 대한 알 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두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언론중재위의 이러한 노력은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까지 기사 삭제 청구권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만드는 노력만큼 (혹은 그러한 노력보다 더)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구본권 (2015a). 저널리즘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0~118, 127~133.
- 구본권 (2015b). 지정토론 I,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에 관하여.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45~50.
-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경환 (2014, 12월).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서울: 언론진흥재단.
- 김동규 (2015). 언론조정을 통해 본 세월호 보도. <언론중재>, 2015년 봄호, 6~17.
- 김민정 (2015a). 실질적 잊힘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14권 1호, 219~248.
- 김민정 (2015b).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언론중재>, 2015년 가을호, 110~120.
- 대법원 선고 2000다37524판결(2002. 1. 22).
- 대법원 선고 자 2003마1477결정(2005. 1. 17).
- 대법원 선고 2010다60950판결(2013. 3. 28).
- 디지털타임스 (2009, 6, 29).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포털에 삭제·임시조치 요청 못한다.
UR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63002010531699010
- 문재완 (2015). 인터넷 인격권 침해와 시간의 경과. <외법논집>, 39호 1호, 137~152.
- 박경신 (2015, 1, 5). '잊혀질 권리' 법제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PD저널>.
UR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3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5. 1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2015-4호.
URL: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Advance_View.php?ko_board=info_Advance&ba_id=9159
- 박정훈 (2013).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프라이버시. <공법학연구>, 14권 2호, 569~601.
- 서울신문 (2014. 12. 10). 경찰 모욕죄, 현장 체포 과정 인권 침해.
URL: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9002&spage=1>
- 양철한 (2014).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하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 40~51.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 10).
- 언론중재위원회 (2014. 12).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URL: http://www.qrhard.com/files/qrh_def/136011/660168.pdf
- 연합뉴스TV (2015. 4. 2). 김무성, 딸 의혹제기 명예훼손 맞고소.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

=0000110503

오마이뉴스 (2014. 12. 6).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삭제청구’ 인정해야.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0256

이데일리 (2015. 5. 15).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시동 ... 논란은 ‘여전’.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667046609369248&SCD=JE41&DCD=A00504>

이승선 (2013).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KISO 저널>, 10호.

URL: <http://journal.kiso.or.kr/?p=2365>

이승선 (2014).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KISO 저널>, 14호. URL: <http://journal.kiso.or.kr/?p=4225>

이재진 (2009). 인터넷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정립. <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75~125.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재진·구본권 (2008). 인터넷 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1~212.

이재진·박성순 (2012). 언론의 오래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근거로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61~91.

이진규 (2014). 포털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

전우용 (2015). <우리의 역사는 깊다>. 서울: 푸른역사.

정영화 (2012).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논고>, 39집, 567~598.

조소영 (2012). 잊혀질 권리: 정보의 웰다잉에 대한 법리 검토. <공법연구>, 41집 2호, 433~457.

주정민 (2015).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언론과 법>, 14권 2호, 39~62.

지디넷코리아 (2015. 9. 23).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24일 오후 2시 방심위 앞서 반대 기자회견.

URL: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923182046

참여연대 (2015). ‘입다물라: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URL: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358502>

최은숙 (2014). <경찰 모욕죄 현행법 체포와 관련된 진정현황 및 사례 발표>. 경찰의 모욕죄 현행법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2014. 12. 15). 황용석, 구원파와 언론중재신청 ‘폭탄’.

URL: <http://hani.co.kr/arti/PRINT/669186.html>

한겨레 (2015. 4. 13).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누가 인터넷에서 가렸나”.

URL: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86662.html>

한국일보 (2014. 8. 11). 잊혀질 권리 ‘디지털 세탁’ 뜨거운 감자로.

URL: <http://www.hankookilbo.com/v/1521f2d26e8c49cfbb921fba63ecb2de>

- 함인선 (2012).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저스티스>, 113호, 5~38.
-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마747결정(2013. 12. 26).
- 헌법재판소 선고 2012헌바37결정(2013. 6. 27).
-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2013.12.26.).
- 홍숙영 (2014a).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디지털 융복합연구>, 12권 6호, 1~11.
- 홍숙영 (2014b). 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기사삭제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디지털 융복합연구>, 12권 12호, 13~22.
- 황성기(199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호, 85~138.
- 황창근 (2015). <정보삭제권리(소위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 및 법제화의 한계>. 프라이버시 정책 연구 포럼. 정보삭제 권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BBC (2015. 6. 25). List of BBC Web Pages Which Have Been Removed from Google’s Search Results. URL: <http://www.bbc.co.uk/blogs/internet/entries/1d765aa8-600b-4f32-b110-d02fbf7fd379>
- Carr, E.H (1961). *What is history*. 김택현(역) (2007).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 Gasparian, T. (2015, March). <Brazilian 2014 Court Decisions: Most Important Developments>. Justice for Free Expression Confer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globalfreedomofexpression.columbia.edu/wp/wp-content/uploads/2015/04/Gasparian-FoE-Brazilian-2014-Court-Decisions.pdf?a2663e>
- Gladwell, M. (2008). *Outliers: The story of success*. 노정태(역) (2009) <아웃라이어>. 서울: 김영사.
- Google Spain and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2014. 5. 13).
- Google Transparency Report, European Privacy Requests for Search Removals (2016. 3. 11). URL: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europeprivacy>
- Guardian (2015. 7. 14). Google Accidentally Reveals Data On ‘Right to Be Forgotten’ Requests. URL: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jul/14/google-accidentally-reveals-right-to-be-forgotten-requests>
-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n ‘Google Spain and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C-131/12 (2014.11). URL: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4/wp225_en.pdf
- Kageyama, Y. (2014. 10. 10). Japan Court Orders Google To Remove Search Results. *AP(Associate Press)*. URL: <http://news.yahoo.com/japan-court-orders-google-remove-search-results-100248499--finance.html>
- Rifkin, J. (2010). *The empathic civilization*. 이경남(역) (2010).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Schönberger, Viktor Mayer,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Telegraph (2015. 9. 3). Telegraph Stories Affected By EU 'Right To Be Forgotten'. URL: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google/11036257/Telegraph-stories-affected-by-EU-right-to-be-forgotten.html>

The Advisory Council to Googl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2015.2.6.). URL:
<https://www.google.com/advisorycouncil/>

Wall Street Journal (2015, 5, 27). Google Wages Free-Speech Fight in Mexico. URL:
<http://www.wsj.com/articles/google-wages-free-speech-fight-in-mexico-1432723483>.

Whitfield, J. (2012). *People will talk: The surprising science of reputation*. 김수안(역) (2012).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는가〉. 서울: 생각연구소.

투고일자: 2015. 9. 30 게재확정일자: 2016. 3. 18 최종수정일자: 2016. 3. 20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So Young Mun

Civil and Local Division II Desk Chief, Seoul Newspaper

Minjeong Kim

Associat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right to be forgotten (RTBF) has been a population notion to address privacy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over the global digital network. In May 2014,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laid down a landmark RTBF decision to grant individuals the right to be de-listed from search results. ECJ's RTBF decision sparked an increased interest in RTBF in South Korea. Academic and non-academic commentators have provided a mistaken or outstretched interpretation of RTBF in claiming that removal of news articles should be read into RTBF in Korean law. Moreover,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of Korea (PAC) has proposed revising the Press Arbitration Act (PAA) to allow the alleged victims of news reporting to request the deletion of news stor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notion of RTBF from its origin to the latest development abroad and also critically explores Korean laws 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to evaluate if Korea needs the proposed PAA revision.

KEYWORDS right to be forgotten, request to be de-listed, Press Arbitration, Press Arbitration Act